

### 책임강의시간 및 강의료지급 규정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2조(강의의 구분과 정의)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"시간강의"라 함은 본 대학 전임교원 이외의 시간강사가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강의의 구분과 정의)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"시간강의"라 함은 본 대학 전임교원 이외의 <b>자</b>가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을 말한다.</p>	
<p>제5조(강의시간의 제한) 주당강의시간은 전임교원의 경우 15시간, 시간강사의 경우 9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부득이하여 담당시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	<p>제5조(강의시간의 제한) <b>전임교원의 주당강의시간은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부득이</b> 담당시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	
<p>제6조(강사료의 계산) 강사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.</p> <p>1. 특수강의는 2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하되 시간강사를 초빙하였을 경우 특수한 사정에 따라 보통강의시간과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(신설)</p>	<p>제6조(강사료의 계산) 강사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.</p> <p>1. 특수강의는 2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하되, <b>강사</b>를 초빙하였을 경우 특수한 사정에 따라 보통강의시간과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다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3.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는 따로 정한다.</b></p>	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제7조(강사료 지급의 특례) ① (생략)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실제시험시간표에 의하여 근무한 교원(시간강사 포함)에 한하며 제3호의 경우는 주당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	제7조(강사료 지급의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실제시험시간표에 의하여 근무한 교원(강사 포함)에 한하며 제3호의 경우는 주당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	
-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</b></p> <p><b>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</b></p>	